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임미애 · 김남희 · 윤후덕
이수진 · 이기현 · 이연희
임호선 · 윤준병 · 정진욱
전종덕 · 권향엽 · 윤종오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,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,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·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,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·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‘지역조합-광역시·도연합회-농협중앙회’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

를 구축함으로써,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. 아울러, 시·도 단위의 공동구매·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, 공제사업과 보건·의료·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8조의2 신설 등).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품목조합연합회”를 “품목조합연합회,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품목조합연합회”를 “품목조합연합회,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품목조합연합회”를 “품목조합연합회,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”로 한다.

제115조제1항 중 “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”를 “품목조합,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및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”를 “조합,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”를 “조합,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”로 한다.

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8조의2(광역시·도조합연합회) ① 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

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(이하 “광역조합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광역조합연합회의 구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시·도의 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광역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기준 및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광역조합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회원을 위한 생산·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
2.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, 보관 및 가공사업
3. 제품 홍보,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
4.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광역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·공공단체·중앙회·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
5. 회원의 조합원인 농업인의 권익과 복리후생을 위한 공제사업
6.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광역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 이 경

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목적, 명칭,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2. 회원의 자격·가입 및 탈퇴
3.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정수와 선임
5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6.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⑥ 광역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광역조합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시·도명을 붙인 광역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시·도명을 붙인 광역조합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174조제1항 중 “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”을 “제112조의3제3항, 제138조제6항 또는 제138조의2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 ① 조 합,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 동사업법인, 제138조에 따른 <u>품 목조합연합회</u>(이하 “조합등”이 라 한다) 및 중앙회는 공직선 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 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 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0조(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 력) 조합등, 중앙회, 제161조의 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(이 하 “농협경제지주회사”라 한다)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, 제1 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 법인, 제138조에 따른 <u>품목조합 연합회</u>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 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, 이해증진 및 공동사 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.</p> <p>제12조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</p>	<p>제7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 ① - ----- -----<u>품</u> <u>목조합연합회</u>, 제138조의2에 따 <u>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 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품목조합</u> <u>연합회</u>, 제138조의2에 따른 <u>광</u> <u>역시·도조합연합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</p>

및 준용) ① (생략)

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⑨ (생략)

제115조(회원) ① 중앙회는 지역 조합,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.

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

및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품목조합연합회,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-----

-----.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15조(회원) ① -----
-----품목조합,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및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-----.

② -----
-----조합,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조합,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제138조의2에 따른 광역시·도조합연합

지나지 아니한 경우

3. (생략)

<신설>

회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138조의2(광역시·도조합연합

회) ① 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광역시·도조합연합회(이하 “광역조합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광역조합연합회의 구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시·도의 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광역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기준 및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광역조합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회원을 위한 생산·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
 2.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, 보관 및 가공사업
 3. 제품 홍보,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
 4.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광역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·공공단체·중앙회·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
 5. 회원의 조합원인 농업인의 권익과 복리후생을 위한 공제사업
 6.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-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광역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

도 또한 같다.

1. 목적, 명칭,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2. 회원의 자격·가입 및 탈퇴

3.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

4. 임원의 정수와 선임

5.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
6.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⑥ 광역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광역조합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시·도명을 붙인 광역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시·도명을 붙인 광역조합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174조(과태료) ① 제3조제2항·
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
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
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

제174조(과태료) ① -----
제112조의3제3항, 제138조제6항
또는 제138조의2제7항-----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~ ⑤ (생략)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